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653
----------	-------

발의연월일 : 2026. 6. 30

발 의 자 : 김선교 · 최수진 · 구자근  
김성원 · 김상훈 · 김대식  
박준태 · 김미애 · 윤상현  
박덕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보충역에 편입시켜 공중보건 의사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로 복무할 경우 3년의 의무복무기간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공중보건 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는 현역병에 비하여 의무복무기간이 길고, 보수의 차이가 거의 없어 지원을 기피하다보니, 공공서비스의 공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공중보건 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단축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지원의 유인을 높여 공공서비스를 강화하며, 병역 의무 이행에 있어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4조 등).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선교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54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55호),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51호) 및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중 “3년간”을 “2년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4조의6제2항 중 “3년간”을 “2년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4조의7제2항 중 “3년간”을 “2년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포함한다”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중보건 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편입되는 공중보건 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법무관의 복무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6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편입되는 공익법무관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기간에 관한 적용례)제34조의7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편입되는 공중방역수의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복무 중인 공중보건 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공익법무관·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기간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이전에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이 법의 개정규정과 인력수급계획 등을 고려하여 단축이 되도록 하되, 편입시기별 구체적인 단축기간은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하되,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생략)

제34조의7(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된 사람은 해당 분야에 3년간 복무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③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한다. 이 경우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제2항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생략)

-----  
-----  
-----  
-----포함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34조의7(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 ① (현행과 같음)

② -----  
-----  
---2년간-----

③ -----  
-----  
-----  
-----  
-----  
-----포함한다.

④ (현행과 같음)